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9. 8 선고 2021가단520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경

피 고 A

소송대리인 B

변 론 종 결 2021. 7. 21.

판 결 선 고 2021. 9. 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0. 10.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20. 10. 22. 접수 제4458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073473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7. 2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B)은 원고에게 18,344,134원 및 그 중 3,846,416원에 대하여 2012.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8. 24. 확정되었다.나. 피고는 B의 아들이다. 피고와 B 사이에 2020. 10. 20.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22.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증여 당시 B 소유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B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B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의 주채무자인 C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원래 피고의 할아버지이자 B의 아버지인 D의 소유였는데, D와 피고 사이에 매매예약이 체결되었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는 D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가) 원고의 B에 대한 판결이 2013. 8. 24.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달리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보전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의 주채무자인 C 주식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채무자가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갑 제1호증의 3항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원소유자인 D와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가 경로되었고,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와 피고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되고, 이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피고가 B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권자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B의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하선화

별지

부동산 목록

1. 충청남도 당진시

2. 충청남도 당진시

3. 충청남도 당진시
-
- 도로 13㎡

답 13㎡

전 251㎡, 골.

